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351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367

03. 비관세장벽 현황_ 370

04. 수출 애로사항_ 384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387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e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기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2) 01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2,055억 달러(한화 약 302조 850억 원)로 전년 대비 6.8% 증가 했으며, 모든 주요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품목이 전년보다 성장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031억 달러(한화 약 151조 5.570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50.2%를 차지함
 - * 채소류 시장이 330억 달러(한화 약 48조 9.100억 원) 규모로 가장 높은 16.1%의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낙농품(11.9%), 과일 및 견과류(11.5%), 육류(8.4%) 순으로 나열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024억 달러(한화 약 260조 5,280억 원) 규모로, 전체의 49.8% 비중을 가지며 신선식품과 규모가 유사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492억 달러(한화 약 72조 3,240억 원) 규모로 가장 높은 23.9%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편의식품 (8.2%), 스프레드 및 당류(5.7%), 스낵류(5.1%) 순 임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61.1	164.8	181.4	192.5	205.5	100.0	6.8
신선식품	78.9	81.0	89.4	95.7	103.1	50.2	7.7
- 채소류	24.9	25.7	28.4	30.6	33.0	16.1	7.8
- 낙농품	18.9	19.5	21.5	22.9	24.5	11.9	7.0
- 과일 및 견과류	17.8	18.3	20.2	21.8	23.6	11.5	8.3
- 육류	13.6	13.7	15.1	15.9	17.2	8.4	8.2
- 유지류	3.7	3.8	4.2	4.5	4.8	2.3	6.7
가공식품	82.2	83.8	92.0	96.8	102.4	49.8	5.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9.6	40.7	44.9	46.6	49.2	23.9	5.6
- 편의식품	13.4	13.7	15.1	16.0	16.9	8.2	5.6
- 스프레드 및 당류	10.7	10.4	11.0	11.3	11.8	5.7	4.4
- 스낵류	7.9	7.8	8.8	9.8	10.5	5.1	7.1
- 소스 및 향신료	6.3	6.5	7.1	7.6	8.0	3.9	5.3
- 영유아용 식품	3.2	3.4	3.6	3.8	4.1	2.0	7.9
- 펫푸드	1.1	1.3	1.5	1.7	1.9	0.9	11.8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2억 8.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전반적으로 균등한 편으로 0~14세 인구의 비중이 24.9%로 가장 높고, 45~54세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 중 가장 낮은 12.7% 수준임
- 여성 인구 수는 1억 3,990명(약 49.8%), 남성 인구 수는 1억 3,870만 명(약 50.3%)으로, 남녀 비중은 균등한 편임
- 2023년 가구 수는 5,96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700달러 (한화 약 397만 원) 규모임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0% 증가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17.2%이며,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준임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740.2달러(한화 약 109만 원)로 집계 되었으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액이 비슷한 수준임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371.3달러(한화 약 55만 원)로 식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50.2%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6.9% 증가함
 - * 채소류의 비중이 1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낙농품(11.9%), 과일 및 견과류(11.5%)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368.9달러(한화 약 54만 원)로 식품과 관련된 전체 지출의 49.8%에 해당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23.9%로 가장 크고, 이어서 편의식품(8.2%), 스프레드 및 당류(5.8%) 순임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2019~2023)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97.4	605.2	663.6	698.3	740.2	100.0	6.0			
신선식품	293.0	297.6	327.1	347.2	371.3	50.2	6.9			
- 채소류	92.5	94.4	103.8	110.9	118.7	16.0	7.0			
- 낙농품	70.2	71.6	78.7	83.0	88.4	11.9	6.5			
- 과일 및 견과류	65.8	67.2	73.9	79.2	85.0	11.5	7.3			
- 육류	50.6	50.3	55.3	57.9	61.9	8.4	6.9			
- 유지류	13.9	14.1	15.4	16.2	17.3	2.3	6.8			
가공식품	304.4	307.6	336.5	351.1	368.9	49.8	5.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46.9	149.5	164.0	169.2	177.2	23.9	4.7			
- 편의식품	49.7	50.5	55.3	57.9	60.9	8.2	5.2			
- 스프레드 및 당류	39.5	38.3	40.3	40.9	42.6	5.8	4.2			
- 스낵류	29.2	28.5	32.2	35.5	37.8	5.1	6.5			
- 소스 및 향신료	23.3	23.7	26.0	27.4	29.0	3.9	5.8			
- 영유아용 식품	11.7	12.3	13.2	13.9	14.7	2.0	5.8			
- 펫푸드	4.1	4.8	5.5	6.3	6.7	0.9	6.3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모든 주요 품목이 전년보다 증가 또는 유지함. 각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로 80.2kg이며, 전년 대비 3.8%의 증가율을 보임
 - * 낙농품 소비량은 42.2kg, 과일 및 견과류 33.9kg, 육류 10.4kg, 유지류 2.9kg가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9.4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1.5% 증가함

^{*} 이어서 스프레드 및 당류가 21.3kg, 편의식품 13.5kg, 소스 및 향신료 8.8kg순으로 집계됨

丑3.	표 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채소류	69.8	71.5	74.6	77.3	80.2	3.8		
A I A-I	- 낙농품	38.4	39.0	40.0	41.0	42.2	2.9		
신선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29.4	30.2	31.5	32.6	33.9	4.0		
극곱	- 육류	9.4	9.4	9.8	10.0	10.4	4.0		
	- 유지류	2.7	2.7	2.8	2.8	2.9	3.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3.8	124.5	127.3	127.5	129.4	1.5		
	- 스프레드 및 당류	23.6	22.6	22.2	21.2	21.3	0.5		
71.77	- 편의식품	12.7	12.8	13.0	13.2	13.5	2.3		
가공 식품	- 소스 및 향신료	8.2	8.3	8.4	8.6	8.8	2.3		
식뭄	- 스낵류	6.6	6.4	6.7	7.2	7.4	2.8		
	- 펫푸드	3.0	3.2	3.6	4.0	4.1	2.5		
	- 영유아용 식품	0.6	0.6	0.7	0.7	0.7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445억 6,191만 달러(한화 약 65조 5,050억 원)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한 규모로 집계됨
 - 주요 수출국은 중국(20.3%)과 인도(11.4%)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미국(8.8%), 파키스탄 (5.1%) 등으로 수출됨
 - * 對중국 수출액은 90억 5,615만 달러(한화 약 13조 3,125억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7.6%로 확인됨
 - * 對인도 수출액은 50억 7,027만 4,000달러(한화 약 7조 4,533억 원)로 전년보다 14.4%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7.0% 의 성장률을 기록함
 - * 對미국 수출액은 39억 1,593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7,564억 원)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주요 수출국 10개 국가 중 일본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수출규모가 증가함
 - 對한국 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18.4% 감소한 7억 85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303억 원) 규모로 집계됨

표 4.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즈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29,250,376	33,330,193	47,330,559	51,491,770	44,561,910	100.0	-13.5	11.1
1	중국	4,735,681	5,093,905	8,565,373	9,143,790	9,056,150	20.3	-1.0	17.6
2	인도	2,701,325	3,500,169	3,909,980	5,921,170	5,070,274	11.4	-14.4	17.0
3	미국	2,402,440	2,667,729	4,184,411	4,654,718	3,915,939	8.8	-15.9	13.0
4	파키스탄	1,230,545	1,737,096	2,883,702	3,223,512	2,259,901	5.1	-29.9	16.4
5	말레이시아	1,735,468	1,913,824	2,713,632	3,305,476	2,179,403	4.9	-34.1	5.9
6	필리핀	1,294,326	1,248,919	1,777,608	1,927,747	1,821,068	4.1	-5.5	8.9
7	베트남	728,062	1,001,789	1,504,802	1,720,539	1,304,812	2.9	-24.2	15.7
8	방글라데시	769,302	769,986	1,477,359	1,568,393	1,258,949	2.8	-19.7	13.1
9	일본	815,458	957,278	1,126,130	1,165,141	1,204,908	2.7	3.4	10.3
10	네덜란드	1,163,349	1,162,437	1,399,888	1,589,069	1,116,171	2.5	-29.8	-1.0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전체 농식품 중 44.1%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팜유이며, 이외 다양한 가공식품류가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 * 기타 팜유 수출액은 196억 3,027만 9,000달러(한화 약 28조 8,565억 원)로 전년 대비 19.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 팜유(조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30억 5,513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4,910억 원)로, 전체 수출의 6,9%를 차지함
 - * 이어서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는 기타 마가린(3.7%), 기타 유박(3.0%), 기타 팜핵유(2.9%) 등이 있음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ᄌ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29,250,376	33,330,193	47,330,559	51,491,770	44,561,910	100.0	-13.5	11.1
1	팜유 (기타)	11,074,588	12,621,245	24,017,213	24,355,703	19,630,279	44.1	-19.4	15.4
2	팜유 (조유)	3,641,687	4,743,567	2,737,923	3,410,127	3,055,134	6.9	-10.4	-4.3
3	마가린 (기타)	660,163	770,420	1,519,379	1,845,811	1,671,049	3.7	-9.5	26.1
4	유박 (기타)	29,514	49,416	126,191	1,110,600	1,342,697	3.0	20.9	159.7
5	팜핵유 (기타)	868,916	1,087,297	1,850,889	1,891,130	1,286,087	2.9	-32.0	10.3
6	식물성 지방 분획물	254,412	288,508	837,884	1,418,807	1,259,726	2.8	-11.2	49.2
7	볶지 않은 커피	872,355	809,164	849,373	1,136,296	915,920	2.1	-19.4	1.2
8	팜너트 추출 유박	562,701	664,603	1,153,687	1,067,453	854,975	1.9	-19.9	11.0
9	조제 식료품	390,091	489,466	602,133	683,425	647,949	1.5	-5.2	13.5
10	기타 식용 동물성 생산품	0	0	0	590,566	633,260	1.4	7.2	-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275억 105만 9,000달러(한화 약 40조 4,265억 원)로 전년 대비 2.7%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이 가장 높은 14.0%의 비중을 차지하며 호주(12.8%), 미국(11.5%), 중국 (11.4%) 순으로 확인됨
 - *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38억 4,633만 6,000달러(한화 약 5조 6,541억 원)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0.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 호주산 농식품 수입액은 35억 2,373만 달러(한화 약 5조 1,799억 원)로 전년보다 12.8% 증가하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6.4%로 나타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억 3,421만 6,000달러(한화 약 3,443억 원)로 전체 수입의 0.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나 순위권 밖에 위치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3/'22) | ('19~'23) 19.955.265 19.324.505 24.449.879 28.251.698 27.501.059 -2.7 전체 100.0 8.3 1 브라질 1.308.577 2.022.081 2.118.064 3.413.464 3.846.336 14.0 127 30.9 1.917.894 1.828.412 3.711.712 3.880.905 3.523.730 12.8 -9.2 16.4 2 호주 3 미국 3.164.139 3.001,740 3.258.982 3.565.427 3.158.333 115 -11 4 0 0 중국 2,651,277 2.547.740 2.812.851 3.126.118 3.131.964 11.4 0.2 4.3 4 9.7 5 태국 1,877,267 1,283,607 1,135,195 2,102,707 2,663,625 26.7 9.1 6 인도 840.115 1.100.326 2.274.112 2.564.336 1.356.511 4.9 -47.1 12.7 1.278,320 7 아르헨티나 1.768.396 1 707 695 1.962.189 2 320 021 46 -44 9 -78 캐나다 791.800 769.181 830.513 883.363 1,187,750 4.3 34.5 10.7 8 175.666 34 308 5 56.4 157.116 164.852 230.110 940.027 9 베트남 3.3 10 뉴질랜드 545.693 606.600 741.601 1.126.164 914.728 -18.8 13.8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단위 : 천 달러, %)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밀(13.7%)이며, 이외 여러 가지 가공식품, 곡류, 육류 등이 상위권에 위치함, 그중 정미된 쌀의 수입규모가 전년 대비 2.838.2%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
 - * 기타 밀 수입액은 37억 5,839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5,248억 원)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 대두유 추출 유박의 수입액은 30억 1,846만 7,000달러(한화 약 4조 4,371억 원)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으며, 전체 수입의 11%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 사탕수수당(9.8%), 정미된 쌀(5.8%), 기타 대두(5.4%) 등이 있음

ш.	·/· 672076	THUS	.010 2020)					(111111	· 2-1, /0/
							비즈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9,955,265	19,324,505	24,449,879	28,251,698	27,501,059	100.0	-2.7	8.3
1	밀(기타)	2,799,260	2,616,036	3,548,356	3,810,393	3,758,399	13.7	-1.4	7.6
2	대두유 추출 유박	1,658,749	1,938,225	2,679,429	3,193,789	3,018,467	11.0	-5.5	16.1
3	사탕수수당(기타)	1,317,596	1,813,552	2,229,890	2,825,118	2,700,730	9.8	-4.4	19.7
4	쌀(정미)	4,154	19,373	41,638	54,529	1,602,174	5.8	2,838.2	343.2
5	대두(기타)	1,064,565	1,003,421	1,482,849	1,627,091	1,474,651	5.4	-9.4	8.5
6	코코아두	584,567	505,495	616,927	547,289	732,283	2.7	33.8	5.8
7	조제식료품	492,866	495,038	629,522	783,219	658,485	2.4	-15.9	7.5
8	냉동 쇠고기	600,223	507,771	664,811	735,272	658,198	2.4	-10.5	2.3

665,818

595,576

597,795

860,467

648,586

596,002

2.4

2.2

8.5

-30.7

5.2

7.8

냉장 마늘

고체 우유

10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529.965

441,747

585,785

541,583

표 7 품목벽 농신품 수인혀화(2019~2023)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억 4,630만 5,000달러(한화 약 3,621억 원)로 전년 대비 0.2% 증가함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총 2억 1,267만 3,000달러(한화 약 3,126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함.
 - * 임산물 수출액은 2,193만 2,000달러(한화 약 322억 원)로 전년 대비 25.7% 감소했으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5.9%로 가장 높음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러, %)

			미조	증감률				
구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69,741	179,097	243,537	245,933	246,305	100.0	0.2	9.8
농산물	149,844	149,237	198,403	208,947	212,673	86.3	1.8	9.1
축산물	11,171	7,757	9,514	7,487	11,700	4.8	56.3	1.2
임산물	8,726	22,103	35,620	29,499	21,932	8.9	-25.7	25.9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식품이며 커피크리머, 기타 무알코올 음료, 건조김, 기타 조제식료품, 조미김 등이 있음
 - * 커피크리머 수출액은 5,540만 달러(한화 약 814억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함
 - * 기타 무알코올 음료 수출액은 1,869만 7,000달러(한화 약 275억 원)로 전년보다 28.1% 증가함
 - * 조미김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7.8%씩 성장하며 2023년에는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46.3% 증가했으며, 이어 건조김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2.9%를 달성하며 전년보다 44.0% 증가함

표 9.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2021 2022 2023			ᄪ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97,674	209,861	285,376	318,314	310,550	100.0	-2.4	12.0	
1	커피크리머	36,833	33,692	49,231	51,751	55,400	17.8	7.1	10.7	
2	기타 무알코올 음료	8,163	7,914	13,816	14,590	18,697	6.0	28.1	23.0	
3	건조김	1,833	4,701	5,000	11,381	16,388	5.3	44.0	72.9	
4	조제식료품 (기타)	5,960	9,248	14,270	10,708	14,683	4.7	37.1	25.3	
5	조미김	490	3,289	4,348	6,247	9,141	2.9	46.3	107.8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할랄인증 취득	신선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과 음료는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할랄인증 취득 시 인도네시아 할랄청과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식품등록 및 SNI 인증 취득	• (식품등록)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식품등록 신청 후 사업자 식별번호 발급 필요 • (SNI 인증) 인스턴트커피, 비스킷 등 일부 품목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에서 발급하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SNI) 인증 취득 필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사전통지 및	 ✔ (사전통지)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관세청에 제출 정보와 함께 도착예정 사실을 통지 	인도네시아 운송·수입
관세납부	· (관세 납부) 수입신고서 제출 전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필요	업체
수입신고	● - 물품 하역 후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검사	·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통관채널을 구분하며, 수입검사 내용 상이 - ① 녹색채널: 저위험식품, 화물검사 면제 - ② 적색채널: 고위험식품, 화물검사 시행 · 신선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화물 도착 7일 전 '신선 농산물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에 제출 필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물품 반출	• 상기 절차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사전에 할랄인증을 취득 필수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식품임을 인증하는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함
할랄인증 취득	- 2026년 10월부터 수입식품의 할랄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었으며, 할랄이 아닌 성분 및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비할랄 라벨링 규정'을 준수한 식품에 한해 인도네시아로 수출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 할랄인증은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에서 취득 가능하며,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국내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취득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할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에서 취득하는 것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내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권장됨
	• 수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한-인니 CEPA,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원산지증명서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관세율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한-인니 CEPA 관세율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인정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업체는 상업송전 통해 수출신고 필수	당,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 수출신고는 수출업: 제공자 명의로 신고	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 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수출신고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	-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인도네시아로 과실류 및 열매채소류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딴중프리옥항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과실파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충청남도산 배를 제외하고 다른 한국산 농산물의 딴중프리옥항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수출검역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식물검역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① 수출 검사신청서				
	축산물검역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수출검역	・국내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 수출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안전성 검사를 신청
	- 수출업체는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안전성 검사 담당자는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분석실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함
	 수출에 적합한 신선 농산물은 검사 후 분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석증명서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가 수입검역 과정에서 제출함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O모네시아는 '선 통관 사후 심사'가 원칙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 납부 필요 · 선 통관 사후 심사' 원칙으로 본격적인 심사는 통관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마쳤더라도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은 아님 지역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제품의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의 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내에 신고 내용이 재검토될 수 있음 · 재검토 결과 문제 발생 시,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통관 당시의 수입신고서 및 기타 선적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함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식품 등록 필요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모든 가공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유통될 수 있음
- OSS(Online Single Subimission)에 수입식품등록허가 신청 후 접수 승인 필요

- OSS 등록 완료 시 사업자식별번호(NIB)가 부여되며, 사업자식별번호는 기업등록증, 수입허가서, 관세청 등록번호를 대체하므로 사업자식별번호를 발급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서 및 식품 등록 관세청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또한, 식품 등록이 만료된 수입업체 역시 OSS 신규 등록 사이트에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 및 식품 원료 중 일부 품목은 의무적으로 SNI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취득 필요 - 생수(미네랄워터), 인스턴트커피(블랙), 비스킷, 소금, 밀가루, 고등어 통조림, 참치통조림 등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품목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 URL: sispk.bsn.go.id -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국가표준규격 인증 취득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취득 절차〉 ①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대상 품목 확인 ② 해당 분야 심사기관 조회 ③ 심사 인증 기관 상담 및 신청 ④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시험검사를 통과 시 인증서 발급 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 기구에 인증서 등록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과세청에 도착 예정임을 통보 핔요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운송수단의 도착 예정과 함께 다음의 정보를 인도네시아 세관에 통지해야 함 〈인도네시아 사전통지 제출 정보〉 사전통지 ① 운송사 상호 ② 선박편, 항공편 등 운송수단 식별번호 및 운송수단 명칭 ③ 출발항 및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직전의 최종 기착지 및 목적항 ④ 도착예정일 ⑤ 하역 예정의 포장, 컨테이너 및 벌크 제품의 개수 ⑥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서 제출 전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필요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외국환은행 및 세관을 통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제세를 관세 납부 납부해야 함 - 딴중프리옥 항구와 수카르노 하타 공항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자신고방식 (EDI)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방식으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할 수 있음.

	〈수입제세 계산방식〉		
	수입관세	CIF*기준 관세율	
관세 납부	부가가치세	(CIF+수입관세)*11%	
	법인세	(CIF+수입관세)*2.5%(API) 또는 7.5%(NON-API)	
	특별소비세	(CIF+수입관세)*특별소비세율	
	소비세	소비세율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하역 후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수입된 물품은 검사 책임 하역해야 함	임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 하에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 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에	따라 수입신고서 제출방식이 상이함에 유의해야 함	
		, 세관과 수카르노하타 세관은 전자신고방식으로 수입신고서를 제출 장매체(USB, CD)를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수입신고서 외에드	도 선하증권 등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	
	← 보다, 다음으로 다 다음으로 아니라 다음을 다 하는데 다음을 다 다음을 다 다음을 다 다음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되었다.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⑥ 매매 계약서	
수입신고	② 선하증권	⑦ 구매 주문서	
	③ 상업 송 장	⑧ 은행 명세서(요청 시)	
	④ 포장명세서	⑨ 제품 카탈로그나 사양서 등	
	⑤ 원산지증명	서(필요 시)	
	- 세관은 내부 검토, 온라인 판매가격, 시장가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격을 확인하며 통상가격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신고가격을 불인정함		
	– 세관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의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한 후 수입신고서를 접수함		
	- 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서 접수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어느 반출 통로(Channel of Release)로 지정되었는지 세관으로부터 통보 받음. 만약 세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통지서에 그 사유가 명시됨		
	• 인도네시아. 검역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 강화		
수입검사 및 검역	- 인도네시아 법안 'No.16(1992)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출입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함.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 부문의 최상위 법안임.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IAAQ)는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수산제품안전청(FQIA)을 통해 수산 제품의 검역 및 품질관리를 규제하고 있음

<u>₹</u>0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선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 신선 농산물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할 경우,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IAAQ)가 수입검역을 진행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화물 도착 7일 전에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함

〈신선 농산물 수입계획 제출 내용〉

① 전체 금액

⑤ 목적지 및 경유지 항구명

② 제품 유형

⑥ 포장재 종류

③ 생산지역 및 상표

⑦ 컨테이너 번호

④ 운송수단

수입검사 및

- 인도네시아 검역담당관은 신선 농산물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의 오염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함
-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경우, 호박류와 오이류에 대해 과실파리 유무를 검사함
-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의 수입검사가 진행됨
-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세관에서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진행
- 인도네시아 세관은 과거 수입자의 통관거부 등 수입이력, 법규 준수도, 신용도와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른 등급을 구분함
- 물품 위험도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관은 녹색채널과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해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진행함(2022년 4월 22일부 황색채널 폐지)

〈인도네시아 위험도별 통관채널 세관검사 내용〉

녹색채널	저위험식품 (화물검사 면제, 통관 후 서류심사, 즉시 반출) 단, 무작위로 검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
적색채널	고위혐식품 (서류검사 및 화물검사 시행)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은 회물출고 동의서를 발급함

물품 반출

- 물품 창고에 화물 출고 동의서를 제출한 뒤 창고 비용 지불 후에 보세구역으로 물품 반출 가능
- 관세청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물품이 인도되며,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수입된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지만, 지정기간 내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이 세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이내에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구분되어 세관이 폐기, 제거, 재수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

● FTA 체결현황

표 10. 인도네시아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및 서명)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칠레, EFTA, 호주, 한국, 일본, 모잠비크, 파키스탄	해당사항 없음	콜롬비아, 케냐, 페루, 미국,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대만, 우크라이나, 걸프협력위원회

^{*} 주 : 2025.01. 조회 기준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인도네시아 CEPA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감자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유자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근,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마늘쫑. 도라지. 호박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느타리, 팽이, 표고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스테비아묘
- * 과실류와 열매 채소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영어로 부기하여야 함
- * 인도네시아는 딴중프리옥항(자카르타)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방지를 위해 딴중프리옥항 입항에 제한을 두고 있음: 현재 한국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만 딴중프리옥항 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 하기의 추가 부기시항을 기재하여야 함 "This consignment is complied with the Indonesian phytosanitary requirements, produced from Chungcheongnam Province which recognized as pest free area as referred in the Decree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No.13/KPTS/OT.140/L/01/2014 dated 6 January 2014 and free from Indonesian pest concern."
- * 목재류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축산물

- 효소제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실류 : 블루베리, 망고

- 채소류 : 마늘, 수박

- 특작류 : 인삼

- 종자류 : 팥, 더덕, 딸기

- 묘목류 : 딸기묘, 알로카시아묘

* 상기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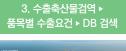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in Bumi / 무궁화 유통 (인도네시아)
업체 유형	수출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r. Miftah (마케팅 담당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흔한 한국 가공식품은 김치, 라면, 떡볶이로, 특히 김치와 매운 라면은 강한 맛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에 잘 맞으며 떡볶이는 독특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많음
- 신선과일 중 배, 복숭아, 샤인머스캣이 크기, 단맛, 식감으로 매력적임.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점점 더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산 복숭아는 달콤하고 향긋한 맛으로 인도네시아 품종보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산 배는 생과 자체로도 인기이고, 디저트로 활용되기도 함. 샤인머스캣은 다른 포도품종과 비교하면 보급률이 낮지만 독특한 외관과 맛으로 관심을 끌고 있음
- 한국식 바비큐와 관련된 요식업이 성장하면서 구운 고기를 싸 먹는 용도로 잘 어울리는 쌈 채소가 점점 더 인기를 끌며, 이에 따라 영양가 높은 쌈 채소로 깻잎과 갓의 수요가 높음
- 한국산 딸기는 크기가 크고 맛있어서 수요가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한국산 농산물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것은 까다로운 법률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 신선 농산물은 질병이나 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역 검사를 거쳐야 하고,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한국 기관과 인도네시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오래 걸림

• 최근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

- 중국에서 수입된 머스캣 포도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 수준의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음.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은 중국산 머스캣 포도 수입을 중단하고 검사를 강화함. 많은 소매업체가 중국산 머스캣 포도를 매장에서 빠르게 철수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수입 과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 건강상의 문제로 더 엄격한 수입 검사와 국제 식품 안전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인도네시아는 Regulation 42(2019), Regulation 39(2019) 등에 근거하여 육류, 식용 내장, 열대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 수입국별로 시장접근 승인제도를 적용함
- 인도네시아는 "향료 첨가물에 관한 2020년 NAFDC 규정 제13호"의 내용을 추가하는 2021년 식품의약품관리청(NAFDC) 규정 제11호를 발표함. 해당 규정으로 향료 보조물질, 합성 향료, 식품 첨가물에 사용이 허용되는 향료 화합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부 변경됨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통관 항구의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 방지를 위해 자카르타 인근의 딴중프리옥 항구를 폐쇄하고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함. 국가안전협정을 통해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받은 국가는 기존 딴중프리옥 항구의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검역 간소화 예외 조치 혜택을 받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 기관의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22개 품목을 설정함
 - 수출국 식품안전담당기관은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의 경우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제출해야 한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충분하고 저렴한 식용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팜유 수출 규제를 다시 강화함
 - 인니는 현재 기업들이 수출 허가의 대가로 생산량의 일부를 현지에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국내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데, 인니 수출업체들은 수출 물량이 국내 판매량의 8배에서 6배로 하향 조정됨. 인니 정부는 식용유 공급 가능성과 가격을 고려하여 수출 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농업부 법령정보포털	http://jdih.pertanian.go.id/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 page/2/order/2/DESC
오염물질 규정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 page/2/order/2/DESC
미생물 규정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 page/4/order/2/DESC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수입 식품 통제 및 검역 강화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24년 7월 4일 수입된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의 검역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WTO에 통보함 - 해당 규정은 검역 과정에서 수입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식품 등에 대한 통제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검역 씰(seal): 격리 대상자의 운송 및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봉인으로 검역관이 운송차량, 컨테이너, 격리시설 등의 물품에 부착 - 동물 및 식물 검역은 농업부, 어류 검역은 해양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던 검역을 검역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구요 내용 ① 수입 시 필요 또는 사용 문서 - 사전 통지서(K-1.2) · 수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통지 서류이며,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 인도네시아 검역청으로 제출 필요 · 작성 내용: 대표자 정보, 원산지, 시설 등록번호, 수입업자/대리인 정보, 상품명, HS 코드, 수량, 위생 증명서(인증번호, 발급장소, 발급날짜), 수출 목적, 가공 정도, 운송 수단 정보 등

세부 내용	- 미준수 통지서(K-7.4)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물품(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미준수 통지서 발행을 통해 물품 정보, 위반 사항, 조치 사항(폐기, 반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② 검역 문서 사용 의무화 - 검역 대상(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처리 및 운송을 위한 표준화된 검역 문서 사용을 의무화 - 검역 문서는 최종 문서 또는 주요 문서(운송 증명서, 운송 장비 출발 증명서, 거부서,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등)와 과정 문서 또는 지원 문서(사전 통지서, 운송 장비 도착보고서, 운송 장비 적재 변동 보고서, 검역 조치 분석 결과 보고서, 물품 하역 승인/거부서 등)로 분류됨(해당 서류 상세는 원문 제 3조와 4조 참고) - 검역 문서는 전자 문서 또는 인쇄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함 ③ 봉인 - 검역 대상의 운송 및 취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역 봉인을 사용해야 함 - 검역 봉인은 종이, 플라스틱, 금속 또는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소재로 만들어지며 플라스틱끈, 테이프, 잠금장치 또는 기타 형태로 만들어짐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검역 서류 및 관련 절차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통보일	2024년 7월 4일
시행예정일	공고 6개월 후(2025년 시행)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696

• 농식품 수입 사전통지 의무확대 적용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인도네시아 검역청(IQA)은 2024년 10월 6일부터 모든 농식품 수입에 대해 사전 통지 제출을 의무화함 지금까지 식물성 제품(예: 신선한 원예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곡물 등)에만 시행되었던 사전 통지 요구가 동물, 어류, 식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적용 수출업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K-1.2)를 제출해야 하며, 상품 설명, 용기 설명, 건강-위생-검역증명서 및 GMO 상태 등의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함(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서 (K-1.2)를 제출) 사전통지 주요 내용 사전통지(K-1.2): 수출자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 통지 필요 위탁인 또는 수출자가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 IQA에 제출해야 함 수출업체/대표자 정보, 원산지, 시설 등록번호, 수입업자/대리인 정보, 상품명, HS 코드, 양/ 포장 단위, 수출 목적, 가공 정도, 운송수단 정보 등의 행정정보 행정 정보 외에 지원 문서 필요(건강/위생/식물 검역증명서, 분석증명서, GMO여부) 미준수 통지서(K-7.4) 수출업체는 이전 선적에서 발견된 SPS 문제에 대한 과거 미준수 통지서를 공개해야 함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아 수출을 진행해 왔음 새로이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분석 신청 → 분석결과 통보(분석증명서 발급) → 사전 통지(인도네시아 검역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통보일	2024년 7월 4일	
시행일	2024년 10월 6일	
개정현황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2024.07.04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 do?ntmld=NTB0203698	

•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규제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2024년 11월 4일, WTO에 「2023년 보건법 17호 시행에 따른 2024년 제28호 정부 규정」을 통보 규정의 섹션8은 비전염성 질병(NCD) 관리를 목표로 하며,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규제함 * 주요 내용 최대 함량 제한: 설탕, 소금, 지방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포함하여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한도를 결정함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함량은 향후 위험 평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설정 중앙 정부는 법령에 따라 특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음 * 라벨링 요구 가공 및 패스트푸드의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업체는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해 규정한 최대 함량 기준을 준수 해야 함 식품 포장에 해당 영양 성분 라벨을 표시하거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정보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특정 시간, 지정된 장소, 특정 대상 고객과 함께 광고, 판촉 및 스폰서십(후원)에 참여할 수 없음 * 시행 시기 설탕, 소금 및 지방 소비 통제 규정은 설탕, 소금 및 지방 함량의최대 한도가 결정된 뒤, 2년 후에 시행 *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현지규제에 맞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함 	
통보일	2024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개정현황	2023년 보건법 17호에 따른 보건부 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4 on Implementation)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697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인도네시아 식품 포장 규제 개정"이 2024년 8월 1일 공표됨. 기존 2019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안전청(BPOM) 규정 No. 20을 개정한 것으로, 허용된 식품 포장재, 이동성 시험 기준, 허용 및 금지된 식품 접촉 물질, 재활용 포장재 사용 요건 등을 규정함. 본 규정이 최종 채택되면 2019년 규정은 폐지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식품 카테고리 규정 개정"이 2023년 6월 6일 공표됨. 기존 2019년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안전청(BPOM) 규정 No. 34/2019을 개정한 것으로, 식품 분류, 식품 원료 사용 기준. 신규 식품 및 식품 원료의 평가 절차 등을 수정함. 2024년 10월 8일 통보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 전에 유통된 가공식품은 시행일로부터 30개월 이내(2026년 12월 6일 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증 규정 개정"이 2024년 10월 17일 공표됨. 기존 2021년 정부 규정 제39호를 개정한 것으로, 할랄 인증 절차 강화, 할랄 및 비할랄 가공 시설 분리,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할랄 인증 절차 도입, 할랄 라벨링 및 비할랄 제품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함.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됨.
- "인도네시아 비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가공식품 규제 개정"이 2024년 7월 26일 공표됨. 패스트 푸드를 포함한 가공식품의 당. 소금. 지방 함량이 최대 한도를 준수하도록 의무화됨. 주요 내용 으로는 영양성분표 표시 의무화, 특정 성분 사용 제한, 광고 및 유통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됨. 본 규정의 시행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 page/2/order/2/DESC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표기 언제품명성분목알레르	• 식품 사업자 정보 • 보관 방법 록 • 영양 성분 정보
	표기언어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및 로마 텍스트로 작성되어야 함 인도네시아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 라벨의 주요 부분의 글씨를 가릴 수 있는 그림이나 색상의 사용은 금지됨 특별한 보관 방법이나 조건이 필요한 경우 라벨에 표기해야 함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의 경우 라벨링 표기 시 스티커 사용이 제한되어 포장재에 직접 라벨이 인쇄되어야 함
	제품명	제품명의 유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으로 라벨에서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제품명은 가공식품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에
라벨	"100	제품명이 규정된 경우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새로운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기사항 (가이드)		식품에 사용된 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완전한 명칭을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제품에 첨가된 물 역시 표시 대상이나, 가공 대상에서 완전히 증발한 경우 표시가 면제됨
	성분목록 -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된 원재료, 가공식품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원재료, 단어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하여 라벨에서 강조한 경우, 식품 유형 또는 제품명에 언급된 경우, 해당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함량 비율을 함께 표시해야 함
		식품첨가물 표시 시 식품 원재료와 구분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Bahan Tambahan Pangan)' 제목을 표시한 뒤에 식품첨가물의 기능과 분류를 함께 표시함
		식품에 사용된 직접첨가 식품첨가물, 이행된(Carry-over) 식품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감미료, 폴리올 등 특정 유형의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관련된 추가 문구 및 정보를 기재해야 함
		동물 또는 식물성 원료 및 특수공정을 통해 생산된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 및 방사선 조사 식품 포함)을 함유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성분목록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할 경우 '유전자 조작 제품(PRODUK REKAYASA GENETIK)', 방사선 조사 식품을 사용할 경우 '방사선 조사(IRADIASI)' 문구를 각각 표시해야 함
		또한, 돼지고기 유래 성분을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상 접촉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시해야 하며, 문구는 주표시면에 최소 2mm 크기의 글꼴로 표기해야 함
		MENGANDUNG BABI (
		알레르기 항원을 함유한 식품에는 성분목록과 함께 알레르겐 항원명을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 표시하고, 경고 문구를 2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알레르겐	알레르기 항원으로 글루텐 함유 곡물, 달걀, 수산물(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땅콩, 대두, 우유(유당 포함), 견과류, 아황산염(100mg/kg 이상인 경우) 등이 지정됨
라벨		경고문구는 '알레르겐 유발물질 함유(Mengandung alergen)', '굵은 글씨로 표시된 성분목록 참조(Lihat daftar bahan yang dicetak tebal)'와 같이 표시함
표기사항 (가이드)		알레르기 항원을 취급하는 생산시설과 동일한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에는 '○○을 처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됨(Diproduksi menggunakan peralatan yang juga memproses ○○)' 또는 '○○을 포함할 수 있음(Mungkin mengandung ○○)'과 같이 경고 문구를 표시함
		국제단위계를 사용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함
	순중량	고형 식품에는 mg, g, kg 등 단위를 사용하며, 액상 식품에는 mL, L 등 단위를 사용함
		반고형 또는 점성이 있는 식품에는 mg, g, kg, mL, L 등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 표시함
	식품 사업자 정보	수입식품의 경우 생산자와 수입업체(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라벨상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해야 함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과 주소 앞에 '○○에 의해 수입/유통됨 (Diimpor/didistribusikan oleh ○○)' 문구를 표시함
		위탁 생산된 가공식품의 경우 위탁 당사자와 수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시프	이 경우 'B를 위해 A에 의해 생산됨(Diproduksi oleh A untuk B)', 'B를 위해 A에 의해 포장됨(Dikemas oleh A untuk B)'과 같은 문구를 표시함. 계약에 따라 생산된
	식품 사업자 정보	가공식품의 경우 라이센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이름, 주소와 함께 '라이센스에 따라 A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Diproduksi oleh A dibawah lisensi)' 문구를 기재해야 함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1회 제공량당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표 형식으로 표시함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으로 총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총 탄수화물, 총 당류, 나트륨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비타민 및 미네랄 등 기타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음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할 때, ①총열량 ②총지방 ③포화지방 ④콜레스테롤 ⑤탄수화물 ⑥섬유질 ⑦당류 ⑧단백질 ⑨비타민 ⑩미네랄 순으로 표시해야 함
	영양 성분 정보	또한, 영양성분표 최상단에 1회 제공량을 표시해야 하며, 총 제공 횟수 및 1일 권장섭취량에 대한 영양성분별 함량비율 등 주요 정보를 한 가지 색상과 글씨체로 표시해야 함
라벨		영양성분표 하단에는 영양성분 섭취기준에 대한 설명 문구를 표시하며, 기울임꼴로 표시해야 함
표기사항 (가이드)		'1일 권장 섭취량에 대한 비율은 인도네시아인의 평균적인 열량 요구량인 2,150kcal 를 기준으로 열량 요구량은 개인에 따라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음(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150kc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atau lebih rendah)'과 같이 영양성분 섭취기준에 관한 문구를 명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세로형 표 형식을 사용하며, 라벨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가로형 표 형식을 사용하거나 선형으로 나열할 수 있음
		면적이 100㎡를 초과함에도 세로형 표 형식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로형 표 형식 사용이 허용됨
	제조일자, 코드 및 유통기한	식품을 생산한 제조일자 및 코드(배치번호)를 라벨상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라벨 외부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 표시 위치를 안내해야 함
		식품 유통기한 앞 '○○ 이전에 사용하기 적합함(Baik digunakan sebelum ○○)'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를 표시해야 함
		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인 가공식품은 일, 월, 연도를 모두 표시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가공식품은 연도 및 월만을 표시할 수 있음
		식품의약청(BPOM) 등록번호

		할랄 라벨에는 할랄로고. 할랄인증서 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함께 표시되어야 함
		클로 다르에는 클로포스, 클로단O시 단호 포는 O 국단호가 함께 표시되어야 함
		해당 내용을 눈에 띄는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포장면적이 작아 모든 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소량으로 구매자 앞에서 직접 판매 또는 포장되는 상품, 대량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할랄 라벨 표시의무가 면제됨
		2022년 3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할랄 인증 마크를 사용해야 함
		2022년 2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 인증청(BPJPH)은 새로운 할랄(Halal) 인증 마크를 발표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마크를 표시해야 함
	할랄 인증	기존 마크를 사용한 제품은 최대 2026년 2월 1일까지 기존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라벨 표기사항	마크	하람 성분으로 제조하였거나 포함된 식품은 '비할랄 식품'임을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가이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그림, 글 또는 비할랄 성분 이름 형태의 비할랄 정보를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함
		HALAL
		기존 인증 마크 변경된 인증 마크
	보관 방법	보관 조건이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개봉 후 1회 이상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 개봉 후 보관 방법을 표시해야 함

• 어린이 음료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울트라 미미 키즈		
원재료명	신선한 우유 (100%). 보존제 무첨가. 알레르겐 함유		
내용량	125mL		
유통기한	사용기한 이전에 사용하세요. 포장 상단을 참조하세요		
제조사	PT 울트라자야 밀크 인더스트리 & 트레이딩 주식회사에서 생산 반둥 바랏 지구 40552,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할랄 인도네시아 ID00410000236860321		
주의	모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양 성분 정보 총 용량 125 ml (1 팩), 팩당 1회 제공량 1회 제공량 당 (총 에너지 70 kkal, 지방 에너지 30 kkal)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영양성분 정보	총 지방 3.5g (5%) 비타민 A 15% 칼슘 15% 콜레스테롤 10mg (4%) 비타민 D3 25% 철분 6% 포화 지방 2.5g (12%) 비타민 B1 15% 마그네슘 4% 단백질 4g (6%) 비타민 B2 20% 요오드 10% 총 탄수화물 7g (2%) 비타민 B3 20% 인 15% 식이섬유 2g (7%) 비타민 B5 25% 셀레늄 20% 당 6g 비타민 B6 30% 칼륨 4% 과당 0g 비타민 B12 15% 콜린 4% 자당 0g 비타민 K 25% 아연 6% 소금 (나트롬) 60mg (4%) 비타민 K 25% 비오틴 10% * 영양소 기준치는 2150 kcal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에너지 요구량은 더 높거나 수 있습니다. 10% 10% 10%	% % % % %	

• RTD 수프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비비고 닭 뼈 수프			
원재료명		닭고기 국물(디소듐 5'-리보뉴클레오티드 향미 강화제, 닭 뼈, 닭고기), 아얀 고기(22%), 물, 닭고기 양념장.		
내용량	500g			
유통기한	별도 표시일까지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보관			
제조사	㈜참프리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오계길 32-29.			
수입사	PT CJ Food Lestari 자카르타 12710 - 인도네시아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 옥수수, 고등어, 게, 새우, 달걀,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를 포함한 제품을 가공하는 장비로 생산됨.			
	서빙 사이즈 250g	영양; , 팩당 2인분, 총 에너지	<mark>가 정보</mark> .l 80 kcal 지방에서 나	오는 에너지 10 kcal
	제공량당 %일일 권장 섭취량*		,,,,,,,,,,,,,,,,,,,,,,,,,,,,,,,,,,,,	
영양성분 정보	총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포화 지방 * 영양소 기준치는 2150 k 수 있습니다.	1.5g (2%) 0g 20mg (7%) 0g (0%) cal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	단백질 총 탄수화물 설탕 소금(나트륨) 으로 합니다. 귀하의 에너지	10g (17%) 7 g (2%) 3 g 680 mg (46%)

● 인증

[필수 인증]

-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도록하는 의약품 및 식품관리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해당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등록을 요구함. 수입업체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현지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됨

인증명	・인도네시아 BPOM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강제유무	·필수	BADAN POM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수입업자의 법률 문소, 보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제조업체 품질관리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건강증명서, 위촉장, 성분 구성정보, 제조공정, 제품 저장 정보, 생산 코드 정보, 레이블 디자인, 완제품 분석 인증서	
비용	• 건강보조식품: 50~100만원 • 신 원료 성분 제품: 150만원 이상 • 품목별 접수비·심사 등록비 약 30만원	
소요기간	• 화장품, 일반 가공식품: 2~6개월 • 의외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2년 이상	
유효기간	· 3년	
절차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지불 → 제품번호 통토 → 인증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	ዸ → 심사

•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 SNI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임. 전자기기, 의료기기, 기타 공산품, 가공식품 등에 요구되는 인도네시아의 인증 제도임. 강제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마크를 표시해야만 인도네시아로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인증서는 최대 4년간 유효함

인증명	•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KAN(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시험인증기관(LSPro)	CNI
강제유무	·필수	SNI Otandar Nasional Indonesia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상표등록증, 카달로그 원본,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 고유번호(NPWP), 사업자 고유번호(NIB) 등 	
비용	• 5,500 ~ 25,000 USD	
소요기간	• 6개월~1년	
절차	・신청 접수 → 공장 심사 → 샘플 검사 → 승인 및 인령	5발급

• 할랄 인증(BPJPH)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BPJPH)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의무화를 수입식품 및 음료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함. 만약 2년의 유예기간 이후 할랄 인증(BPJPH) 의무화가 확정되면, 할랄 인증(BPJPH)이 없는 제품은 인도 네시아 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됨. 또한, 제품이 비할랄 제품일 경우에도 반드시 비할랄 제품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HALAL	
· 할랄 인증청(BPJPH)	
·필수	
• 신청서, 등록 양식, 제조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 위임장 할랄 담당자의 여권 사본 및 이력서, 인증 대상 제품 목록 및 할랄 인증 품목 유형, 이능 대상 재료 목록 및 현황, 인증 대상의 제조 공정도, 할랄 안전 관리 시스템의 매뉴얼	HALAL INDONESIA ESTOSEOSCOCCOS
· 20~50만원	
· 1~2개월	
・4년(만료일 2개월 전 인증갱신)	
•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 판정 및 승	당인 → 인증서 발급
	한 할 인증청(BPJPH) 필수 신청서, 등록 양식, 제조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 위임장 할랄 담당자의 여권 사본 및 이력서, 인증 대상 제품 목록 및 할랄 인증 품목 유형, 이능 대상 재료 목록 및 현황, 인증 대상의 제조 공정도, 할랄 안전 관리 시스템의 매뉴얼 20~50만원 1~2개월

04 수출 애로사항

● 할랄 인증 필수로 인한 수출 지연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ТВТ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신할랄법의 시행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은 할랄 인증 적용이의무화되며, 제품에 따른 단계적 시행 정책에 따라 식품에는 2024년 10월 17일까지계도기간을 거친 후 의무 적용됨 신할랄법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할랄인증청이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할랄 검사를 수행해야 함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외국 할랄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할랄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없음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여부 :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 해당 민관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할랄인증처(BPJPH)의 할랄인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제외한 비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색과 형태로 된 성분분석표 추가 필요
애로 사항	• 할랄 인증 필수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할랄 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기타	※ 인도네시아, 상호인정협정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사이트 개설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720&menu_ 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 srchWord=%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 &page=1&srchGubun=427

● BPOM 등록 절차 및 e-licensing 시스템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건강보조 식품
유형*	SPS
주요 내용	 BPOM 필수 10종 서류는 무역계약서, GMP 인증서, 할랄 인증서, FSC, 제품 성분표, 완제품 분석 보고서, 안정성 시험 결과, 라벨 디자인, 독성시험 결과, 수입업자 사업자 등록증(NIB)으로 구성됨 모든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주요 서류는 인도네시아 영사관 확인이 필요함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 승인 검사기관을 통해 중금속, 미생물 오염도, 기능성 성분 함량 검증이 필수로 진행됨 검사 결과 통보까지 평균 45일이 소요되며, 긴급 의뢰 시 30일이 소요됨 e-licensing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행상황 추적, 자동 형식 검증, 통합 문서관리가 가능함 e-Registration Portal에서는 제품 카테고리 선택 및 필드별 문서 업로드가 필요하며, 한글 문서는 인도네시아어 공증본만 허용됨
애로 사항	 건강보조식품의 BPOM 제품등록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요구서류와 요구사항이 방대하며, 한국 식약처 또는 국가인증기관의 인증서로 대체가 불가능함
기타	※ e-Registration 가이드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 lename=Retail%20Product%20Registration%20Guide%20for%20Imported%20 Food%20and%20Beverages%20_Jakarta_Indonesia_6-29-2018.pdf

♪ 가공식품 내 사용 금지 첨가물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SPS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이 2023년 9월 「2023 No.22」 규정을 발표하여 가공식품 사용 금지 원료 및 첨가물 성분 목록을 업데이트함 · 2023년 8월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해당 규정의 금지 물질을 함유할 수 없음 · 금지 성분 목록에는 호르몬을 함유한 동물기관 등 천연 성분 156종과 리포산 및 아세트 L-카르티닌을 포함한 화학 합성 성분 5종이 포함됨 · 이번 개정을 통해 천연 성분과 합성 성분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식품 첨가물 45개 성분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됨 · 규정에 대한 세부 목록은 「2023 No.22」 규정 부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애로 사항	•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리포산이 인도네시아로는 수출 금지 성분임
기타	※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사용 금지 원료 및 식품첨가물 금지 성분 목록 개정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690&menu_ 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directInput&srchFr=2023-01-01&src hTo=&srchTp=2&srchWord=%EC%9D%B8%EB%8F%84%EB%84%A4%EC%8B %9C%EC%95%84&page=2&srchGubun=427 ※ REGULATION OF THE INDONESIAN FOOD AND DRUG AUTHORITY NUMBER 22 OF 2023 https://jdih.pom.go.id/download/rule/1610/22/2023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영유아용 이유식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인도네시아 수입을 위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의 인증 인허가 관련 검토 요청

♪ 제품 조사 결과

- 식약청(BPOM) 등록 유형
- 본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등록 신청에 어린이 간식(Makanan Selingan untuk Anak) 카테고리에 등록 대상
- ML(Makanan luar) 수입 일반 가공 식품 등급으로 분류 가능

No.	제품명	등록 기관	등록 유형
01	영유아용 이유식	식약청(BPOM)	ML

• 등록 유형에 따른 카테고리 적용

-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영유아 적용 식품 타입에는 0-6개월/6-12개월 /12-24개월 그리고 1-3세용의 타입이 있음
- 0-6개월 대상은 이유식 적용이 없으며 분유류만 적용 가능
-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MP-ASI 이유식은 6-12개월 대상과 12-24개월 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또 대상적용에 따라 비타민 및 미네랄 최소 의무 함유가 필요
-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BPOM 2023년 No. 13 식품의 카테고리 분류 규정에 따라 1-3세용으로 '어린이 간식(Makanan Selingan untuk Anak)' 카테고리 타입에 적용 가능하며 이는 미네랄 및 비타민의 함유 의무 대상이 아님

• 전성분 조사 설명

- 1-3세 기준 어린이 간식(Makanan Selingan untuk Anak) 적용 기준의 전성분 조사 결과,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이 사용 가능함
- 전성분은 모두 식품재료에 해당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데이터에 등록 가능한 재료임

- 완제품 의무 시험 성적서 검사 항목
- 외부 공인 시험 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음식 유형: 어린이 간식(Makanan Selingan untuk Anak)
- 미생물 검사 항목(PERKA BPOM NO. 13 TH. 2019):
 - ① 총 균수: 3 x 10³ coloni/g(n=5)
 - ② 살모넬라: Negative(n=30)
 - ③ 장내세균과: 10 coloni/ml(n=5)
 - ④ 황색포도상구균: 10² coloni/g(n=5)
- 중금속 검사 항목(PERKA BPOM NO. 9 TH. 2022):
 - ① 비소(Arsenic, As): (0.02 mg/kg
 - ② 납(Lead, Pb): <0.01mg/kg
 - ③ 수은(Mercury, Hg): (0.01 mg/kg
 - ④ 카드뮴(Cadmium, Cd): 〈0.01 mg/kg
 - ⑤ 주석(Tin, Sn): 〈40 mg/kg

• 영양성분 의무검사 규정

- PerBPOM No.24 Tahun 2020 1~3세 어린이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 검사 필요:
 - ① 총 지방: 44g/dav
 - ② 칼로리: Max. 100 kcal/100g, Max. 200 kcal/day
 - ③ 단백질: 26 g/day
 - ① 총 탄수화물: 155 g/day (탄수화물 관련 첨가물 제한: 자당, 과당, 포도당, 포도당 시럽, 꿀 = Max. 5g/100 kcal, 과당 함량 = Max. 2.5g/100 kcal)
 - ⑤ 포화지방: g/day
 - ⑥ 나트륨: 1000 mg/day
 - ⑦ 당류
- 영양정보 표시는 1회 섭취량으로 표기해야 함

• 시험 검사 유의사항

- 시험검사 항목의 단위 기준과 검사법이 표기되어야 함
- 한국 외부 시험기관(공인인정기관) 또는 인도네시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제출 가능 (단, 영양성분검사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결과자료 필요)

• 인도네시아 라벨링 제도 중요정보

- 건강기능식품 등은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적용
- 인도네시아 국가 할랄인증 의무화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획득하거나 교차 인정 인증서 등록 신고 필요
- 할랄 접수처: BPIPH(종교부-할랄제품보장청), 할랄 인증 심사: LPPOM MUI, Sucofindo, Survev Indonesia
- 인도네시아 BPIPH 할랄 상호인정(MRA) 체결: 한국 할랄 인정기관 KMF, KHA, KTC, BIC

• 유아 이유식 기준 시험검사 의무 사항(1-3세 동일 기준)

- 미생물 검사 항목(PERKA BPOM NO. 13 TH. 2019):
 - ① 총 균수: 3 x 10³ coloni/g(n=5)
 - ② 살모넬라: Negative(n=30)
 - ③ 장내세균과: 10 coloni/ml(n=5)
 - ④ 황색포도상구균: 10² coloni/g(n=5)
- 중금속 검사 항목(PERKA BPOM NO. 9 TH. 2022):
 - ① 비소(Arsenic, As): (0.02 mg/kg
 - ② 남(Lead. Pb): (0.01mg/kg
 - ③ 수은(Mercury, Hg): <0.01 mg/kg
 - ④ 카드뮴(Cadmium, Cd): <0.01 mg/kg
 - ⑤ 주석(Tin, Sn): 〈40 mg/kg

• 유아 이유식 기준 시험검사 의무 사항(1-3세 동일 기준)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2020년 No.20에 따른 연령별 필수 함량 기준 충족 필요

No	Description	BPOM 의무 규정		
1	수분 함량	인스턴트 식품(분말, 비스킷, 러스크 형태)	Max. 5%	
		조리 제품(파스타/기타 형태)	Max. 12.5%	
2 에너지	연령 6-12개월	Min 240 kcal/day		
	에너시	연령 12-24개월	Min 640 kcal/day	
2	C L H H T I	연령 6-12개월	Min 1.9 g/100kcal, Max 5.5 g/100kcal	
3 단백질	연령 12-24개월	Min 0.8 g/100kcal, Max 5.5 g/100kcal		
1	TIHE	총 지방	Max 4.5 g/100 kcal	
4	4 지방	알파 리놀레산(α-linolenic acid)	Min 50 mg/100 kcal	
5 탄수화물	- 탄수화물	자당, 과당, 포도당, 포도당 시럽 또는 꿀에 첨가된 포함 기준	Max 5 g/100 kcal	
	<u>.</u>	과당 함량	No more than 2.5 g	/100 kcal
6	식이섬유	식이섬유	Max 1.25 g/100 kc	al
		필수 의무 비타민 및 미네랄(MANDATORY)		
			6-12개월	12-24개월
		비타민 A(mcg RE/100 kcal)	60-180	60-180
		티아민 (mg/100 kcal)	Min 0.05	Min 0.05
		비타민 B12(mcg/100kcal)	Min 0.05	Min 0.075
		비타민 D (mcg/100 kcal)	1 - 3	1 - 3
		철분 (mg/ 100 kcal)	Min 3.56	Min 0.86
		아연 (mg/ 100 kcal)	Min 0.86	Min 0.45
		칼슘 (mg/ 100 kcal)	Min 80	Min 80
		인 (mg/ 100 kcal)	Min 67.5	Min 48
		나트륨 (mg/ 100 kcal)	Max 100	Max 100
7	비타민 및 미네랄	칼륨 (mg/ 100 kcal)	Min 140	Min 266
		요오드 (mcg/ 100 kcal)	Min 1.2	Min 4.5
		마그네슘 (mg/ 100 kcal)	Min 13.9	Min 6.1
		추가 가능한 비타민 및 미네랄		
		리보플라빈 (mg/ 100 kcal)	Min 0.07	Min 0.06
		나이아신 (mg/ 100 kcal)	Min 1.12	Min 0.68
		판토텐산 (mg/ 100 kcal)	Min 0.18	Min 0.18
		비타민 B6 (mg/ 100 kcal)	Min 0.09	Min 0.06
		엽산 (mcg/ 100 kcal)	_	Min 4.8
		비타민 C2 (mg/ 100 kcal)	Min 2.7	Min 2
		비타민 E (mg/ 100 kcal)	Min 0.5	Min 0.5
		비타민 K (mcg/ 100 kcal)	Min 2.5	Min 2.5

♪ 자문 결론

- 본 제품은 영유아 이유식으로 인도네시아 기준에서는 개월 연령 및 세분화 규정 관리되고 있는 점과 6~24개월용 이유식 제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 검사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허가가 가능함
- 이에 본 제품은 초기 시장 진입과 제품 브랜드 인지 홍보를 위해 1-3세용 유아 전용 간식용으로 허가 준비함이 등록 허가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허용 이외의 신 재료 사용 시 신재료(인도네시아 미 등록)의 사용을 위해 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식품표준평가국(Standardization of Processed food)'에 별도의 절차를 받아 사용 승인 후 적용 가능하며, 통상 단기독성, 장기독성, 임상자료, 논문, 3개국 이상 등록 사례 등의 안정성 및 품질 안전에 대한 검증에 1여년 소요될 수 있어 단일 제품 사용을 위한 신 재료(인도네시아 사용 기준) 등록에 기업이 추진하기는 시간과 비용소요의 부담이 있음

(2) 건강기능식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인도네시아 수입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제품(프레스 샷 글로벌)의 인증 인허가 관련 검토 요청

♪ 제품 조사 결과

- 식약청(BPOM) 등록 유형
 - 본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등록 신청 요건의 가공식품 카테고리(유형) 적용에 적합한 카테고리 선정이 어려움
 - 일부 재료는 식품재료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타민류 및 미네랄류의 재료 일부가 1일 섭취 기준 초과 등으로 기타가공식품에 적용이 불가함
 - 본 제품은 전성분의 주구성이 활성 재료인 비타민류, 미네랄, 효소 혼합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 신청 대상으로 적용 가능함
- SI: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급으로 허브 재료와 함께 비타민류 등이 복합 재료인 제품

No.	제품명	등록 기관	등록 유형
01	프레스 샷 글로벌(Press Shot Global)	식약청(BPOM)	SI

• 전성분 조사 설명

- 활성재료 중의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3, 비타민 E, 비오틴, 칼슘판토텐산, 피리독신염산염, L-글루타민, L-아르지닌, L-라이신은 1일 섭취기준에 제한되어 있는 활성재료이나, 본 제품의 구성 사용함량은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사용 가능함
- 부형제 중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소듐벤조에이트, 스테비아는 식약청 기준 사용량 제한 기준이 있으나, 해당 재료 모두 인니 1일 섭취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에 무제 없음
- 알파 글루코실트랜스퍼라아제 처리 스테비아의 경우 최대 Max 2,500 mg/kg로 초과 사항은 아니나, 원료 사항에 레바우디오사이드 A 90%, 레바우디오사이드 B 95% 규격에 따라 계상 검토에 참고 되어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활성재료와 부형제로 구분이 필요함. 활성재료를 구분하여 먼저 순차 기입하고 부형제 재료를 표기하여 구분 기입식으로 작성 제출 필요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활성재료들은 인니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 사용에 제한은 없으며, 안정성 평가 자료에 활성재료에 대한 효능 자료, 공정도,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추가 준비돼야 함. 또한 잔여 유효 검사 및 안정서 보고서 등이 요구됨
- 본 제품의 경우 파우더와 액상구분 포장으로 전성분표 또한 분리 표기돼야 함

• 제품의 전성부표 작성 기준

- 전성분표는 활성재료/부형제료로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능성 또는 용도가 함께 기재 표기 필요
- OTSM 등급에서는 제조 시 1lot(또는 Batch)에 대한 제조량의 기재와 함께 사용량 % 기재가 필요함 (의무 기재 사항)
- OTSM(Obat Tradisional & Supplement Makanan):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완제품 의무 시험 성적서 검사 항목

- 액상유형: 허브제품 제외 일반 건강기능식품의 액상 제품 BPOM No.24, 2023 규정
 - 관능검사
 - ② 알코올 함량 NMT 1%
 - ③ 산도 측정
 - ④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검사
 - ⑤ 유효 함량 검사
 - ⑥ 내용량 검사: 내용량 100%

- ⑦ 미생물 검사(허브 미함유): 총 균수: ≤ 10° CFU/g, 총 곰팡이 및 효모: ≤ 10° CFU/g 대장균: Negative/10g
- ⑧ 중금속 검사: 납(Lead, Pb): 〈 5mg/kg, 카드뮴(Cadmium, Cd): ≤ 1 mg/kg 비소(Arsenic, As): ≤ 5 mg/kg, 수은(Mercury, Hg): ≤ 0.5 mg/kg

• 시험 검사의 유의 사항

- 건강기능식품 등록 대상의 액상 제품의 재료 생산 공정 및 완제품의 생산 공정상 알코올 보조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잔류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 알코올이 0.001% 이상일 경우 해당 검사 결과를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함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기타 중독성 물질(NAPZA, Narcotics, Psychotropics and Other Addictive Substances)은 전통의약품의 경우 전성분의 구성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잔류 검사 대상임
- 시험검사 항목의 단위 기준과 검사법이 표기되어야 함
- 한국 외부 시험기관(공인인정기관) 또는 인도네시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제출 가능함

♪ 자문 결과

- 본 제품은 전성분 구성의 복합성과 주요 활성재료들의 사용량 등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건강 기능식품으로 등록 준비가 필요함
- 한국의 경우 부형제 사용이나 인도네시아 기준 활성재료로 해당되어 구성 사용에 안정성 자료 입증 요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허용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제품 재료의 구성 배합이 인도네시아에 신규 구성일 경우 식약청의 안정성평가심사국에 등록 이전 사전 안정성평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음
- 본 제품의 경우 미네랄, 비타민류 등의 구성이 인도네시아에서 미적용 사례는 아니므로 등록 진행이 가능한 전성분 구성임
- 본 제품의 구성 유형이 파우더와 액상을 구분 포장하여 일체형으로 구매 또는 섭취되도록 하고 있어, 안정성 평가 보고서와 제형 구성을 파우더와 액상으로 구분 준비해야 하며, 안정성 평가 보고서 준비에도 포장 제형을 구분하여 보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음
- 파우더와 액상이 분리된 제품의 경우, 분리 이유와 기능성·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각각의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인허가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음